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인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54

발의연월일: 2021. 1. 29.

발 의 자:최인호·박재호·전재수

김윤덕 • 이용호 • 조승래

한병도 • 어기구 • 고영인

홍기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양식산업발전법」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.

그러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약 360ha 면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굴 채묘업의 경우 수산종자생산업으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, 굴 채묘업이 행해지는 해역이 신항 건설 등 각종 공익사업이 많은 해역에 해당하여 어업손실보상 문제 및 처분권 자의 책임 논란 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음.

또한 굴 채묘업이 해당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, 무허가 상태로 운영됨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.

이에 관행적으로 행하던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하여, 피해에 대한 손 실보상 등의 청구배제를 전제로 한정허가를 할 수 있도록 「양식산업 발전법」의 한정양식업면허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(안 제27조).

법률 제 호
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 중 "제13조제2항, 제20조"를 "제13조제2항, 제18조, 제20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「양식산업발전법」의 준	제27조(「양식산업발전법」의 준
용)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	용)
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	
고는 「양식산업발전법」 <u>제13</u>	<u>제13</u>
<u>조제2항, 제20조</u> , 제26조 및 제	조제2항, 제18조, 제20조
41조제1항·제4항을 준용한다.	